

제 호

민 방 위 경 보 단 말 장 비 인 증 서

인증사업자 상호(회사명):

대표자:

주 소: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1. 유형:
2. 제조/공급회사명:
3. 인증번호:
4. 인증시험일:
5. 비고:

년 월 일

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